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

1. 대주주명		DB캐피탈(주)
2. 신용공여내용	신용공여일	2018년 6월 1일
	신용공여종류	신용대출
	신용공여금액(원)	24,000,000,000
	신용공여총잔액(원)	24,000,000,000
	만기일	2020년 5월 31일
	신용공여금리(%)	인출 건별로 산정
3. 자금용도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조달
4. 이사회결의일		2018년 5월 25일
5. 기타		- 본 건은 자회사인 DB캐피탈(주)에 대한 240억원의 한도약정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임 - 상기 2항의 신용공여일은 대출약정 체결일임 - 상기 2항의 신용공여금액은 대출한도임 [주요내용] - 대출방식: 한도금액(240억원) 내 분할인출가능 - 적용금리: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준용하여 인출 건별로 산정 - 한도기간: 2018.06.01 ~ 2020.05.31 (2년)